

우진공업(주) 협력업체 ESG 행동규범

우진공업(주)는 협력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은 인권, 보건, 안전, 환경, 책임있는 조달 및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시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 적용되며, 협력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개요

우진공업(주)는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 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우진공업(주)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윤리

-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준수
 - .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청탁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된다.
 - . 협력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 2) 이해상충 방지
 - .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 한다.
 - .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 불공정 거래 방지
 -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한다.
 - . 협력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협력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 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 하여서는 안 된다.
 - . 협력사는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해서는 안 된다.

- 4) 지적재산 보호
 - .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5)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우진공업(주)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 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한다.
 - .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3.환경

-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 점검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한다.

- 3) 수자원 관리
 -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 한다.

- 4) 대기오염물질 관리
 - .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협력사는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 5)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 .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협력사는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화학물질 관리
 - .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 .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 복원, 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노동/인권

- 1) 아동노동 사용 금지
 - . 협력사는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 . 협력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2) 강제노동 사용 금지
 -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 .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 한다. 우진공업(주)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협력사는 협력사의 거래업체가 판매제품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우진공업(주)에 알려야 한다.
- 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 협력사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4) 인도적 대우
 - .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윤리적인 채용
 - . 협력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 협력사는 고용을 명분으로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5.안전/보건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한다.
- 2) 비상상황 대응
 - .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 .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3) 사고 관리
 -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한다.
 -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4) 안전 진단
 - .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외국인등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어려움 없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 한다.
- 5) 보건 관리
 -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
 -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 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6.경영시스템

- 1) 담당자 선임
 - . 협력사는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한다.
 - .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2) 리스크 점검
 - .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 3) 교육 및 소통
 -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 4) 정보 관리
 - .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고충처리 제도 운영
 - .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6) 구제수단 마련
 - . 협력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방안을 마련 한다.
 - . 협력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 7) 규범 준수
 - .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행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우진공업(주)가 진행하는 서면점검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 약 서

원문	나는 우진공업(주)의 행동규범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 하였으며 앞으로 나의 모든 행동은 행동규범에 부합 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자필기재	나는 우진공업(주)의 행동규범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 하였으며 앞으로 나의 모든 행동은 행동규범에 부합 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일 자 : 2024 년 월 일

소 속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우진공업 주식회사 귀중